

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06.26.)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06. 01.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3. 06. 02.
-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2023. 06. 23.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광식 재무과장,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나.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른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을 의결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77,177	983,848	763,843	220,005
일반회계	896,339	899,606	704,981	194,625
특별회계	80,838	84,242	58,862	25,380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77,177	988,637	983,848	868	3,920	100.7	99.5
일반회계	896,339	903,709	899,606	711	3,391	100.4	99.5
특별회계	80,838	84,928	84,242	157	529	104.2	99.2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63,587	113,589	977,177	763,843	167,272	6,360	39,700
일반회계	793,092	103,248	896,340	704,981	151,406	6,321	33,633
특별회계	70,495	10,341	80,837	58,862	15,866	39	6,067
공기업	52,501	9,110	61,611	47,104	10,112	0	4,394
기타	17,994	1,231	19,226	11,758	5,754	39	1,673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전 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1건	11,249	654	654	

이 체(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의 견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그쳐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후 집행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21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5) 계속비 결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51,379	11,451	39,842	85
1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15,623	945	14,679	-
2	문화관광자원개발-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전환사업)	5,715	2,124	3,591	-
3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 (전환)	4,169	1,107	3,062	-
4	백두대간 거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66	798	168	-
5	산림레포츠파크 지역특화형 숲속의집 조성사업(기초계정)	600	-	600	-
6	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 설치	500	-	500	-
7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990	652	257	82
8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전환)	1,988	745	1,239	4
9	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4,000	39	3,961	-
1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315	67	248	-
11	신활력플러스사업	5,127	1,072	4,055	-
12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6,330	3,870	2,460	-
13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2,556	31	2,525	-
14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2,500	-	2,500	-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5,043	68	4,974	0
1	거창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5,043	68	4,974	0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5건(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음.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7,485	6,970	41	473
기획예산담당관	군정 방향 기획	소상공인 지원	352	144	-	208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32	1	-	1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12	10	-	2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15	15	-	0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20	18	-	2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6,060	5,891	-	169
복지정책과	재해 구호	재해구호	50	50	-	-
복지정책과	재해 구호	재해구호	100	16	-	84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사업	1	0	-	1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사업	69	69	-	0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한발대비 용수개발	25	24	-	1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한발대비 용수개발	725	677	41	6
농업기술과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저장양과 출하연기사업	25	25	-	0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13건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긴급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중 이월액이 있는 예비비의 이월사유 설명이 필요함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계	355	488,777	259,372	167,266	
명 시 이 월	147	231,910	122,118	90,175	
일반회계	134	206,588	106,556	82,067	
특별회계	13	25,322	15,562	8,108	
사 고 이 월	175	197,468	122,966	32,069	
일반회계	168	183,935	118,360	29,495	
특별회계	7	13,533	4,606	2,574	
계속비 이월	33	59,399	14,288	45,022	
일반회계	29	50,550	10,621	39,842	
특별회계	4	8,849	3,667	5,180	

심 사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8종)	149,791	△1,167	40,466	41,634	148,623
식품진흥기금	135	△1	84	86	134
중소기업육성기금	6,176	△500	12	512	5,676
사회복지기금	2,544	△79	25	105	2,465
재난관리기금	3,374	26	837	811	3,400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5	△3	5	8	502
옥외광고발전기금	368	△211	314	103	578
체육진흥기금	1,104	△1	9	10	1,103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35,586	△820	39,180	40,000	134,766

심 사 의 견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아울러 그 외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9) 채권액 결산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307	3,028	3,075	4,260
일반회계	3,090	28	390	2,728
특별회계	1,207	3,000	2,685	1,522
농업발전기금	1,207	3,000	2,685	1,522
기 금	10	-	-	10
사회복지기금	10	-	-	10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심 사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307백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3,028백만원이 발생하고, 3,075백만원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206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10백만원, 보증금채권 143백만원, 융자금 채권 4,082백만원임

-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권과 사무실 임대이며,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등이 있음.

10) 채권액 결산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11) 보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234,150 (143,471)	227,563 (143,309)	196,155 (102,016)	25,078 (35,849)	7,288 (5,524)	
일반회계	227,679 (143,469)	221,158 (143,307)	190,348 (102,016)	24,528 (35,849)	7,242 (5,522)	
특별회계	발전소	30	30	30	(0)	(0)
	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230 (0)	230 (0)	213 (0)	0 (0)	16 (0)
	수질개선	6,211 (2)	6,145 (2)	5564 (0)	550 (0)	30 (2)

※ ()내는 군비 부담액임.

심 사 의 견

- 2022년도 보조금 예산액 377,621백만원이며, 수령액은 370,872백만원이며, 집행액은 298,171백만원으로 60,927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143,649백만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39%에 해당됨.

전체심사의견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결산은 사후적인 절차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으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책임을 해제하는 기능임.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2022년도 총 세입액은 983,848백만원, 총 세출액은 763,843백만원으로 220,004백만원(세입액의 22%)이 집행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았음.
- 지난해 잉여금(168,128백만원, 세입액의 18.9%) 보다는 51,875백만원 늘어나는 등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총 세입은 983,8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889,103백만원) 94,74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83,817백만원(42.8%)이고, 보조금 226,470백만원(25.3%), 조정교부금

41,237백만원(4.6%), 지방세는 39,193백만원(4.4%), 내부거래가 188,038백만원(21.0%)이며,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6.4%, 이전수입은 72.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0%임.

- 총세출은 763,843백만원으로 전년(720,974백만원) 대비 42,86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분야별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 156,073백만원(20.5%) △사회복지 147,147백만원(17.2%) △환경 117,186백만원(14.1%) △일반공공행정 88,333백만원(10.7%) △국토 및 지역개발 71,620백만원(12.8%) 순임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8종류임.
- 2021년도말 조성액은 149,79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466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1,634백만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148,62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21년 대비 (62,792백만원) 21,15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0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의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잉여금)은 2021년 대비 51,875백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보조금 반납은 2021년(7,003백만원) 대비 823백만원이 증가한 7,827백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포기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이 324백만원(2021년 481백만원)으로, 코로나19 등 징수여건이 악화됐더라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불납결손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엄격하고 적법한 결손처분절차를 준수하여 관리가 필요함

III 질의 및 답변 : 생략

IV 토론요지 : 해당없음

V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